



2026. 2. 9.(월) 09:30
제3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운 영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서 용 관

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발의년월일: 2026. 1. 27.
- 발 의 자: 이진환 의원 등 8인

2. 제안이유

-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, 내실 있는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변경 (제2조제2항)
 -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“매년 제2차” 를 “매년 제1차” 로 변경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
- 다. 관련부서 : 의회사무국
- 라. 입법예고 : 2026. 1. 27. ~ 2. 1.(5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기존 하반기(제2차 정례회)에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(제1차 정례회)로 조정하려는 사항임
- 동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분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결산검사와 연계하여 좀 더 심층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예산안 심사도 보다 집중력이 높아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나 당해연도 진행 사업에 대한 하반기 감시 기능이 자칫 소홀해질 수 있음에 따라 이 점에 유의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여짐
- 검토결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에 따라 상충할 수 있는 「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함께 정비하였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
☑ 「지방자치법」

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,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.

☑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 규정의 정비 사안이며, 재정적 수반 요인이 없어 기술적인 비용 추계가 곤란함

4. 작성자

-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서용관